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82호 2021. 2. 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18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,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요금 면제 (안 제3조의2제3항)

나. 주차장 표지 설치 규격 및 설치방법 변경 (안 제5조)

다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17조)

○ 현행 : 감정평가업자

○ 개정 : 감정평가법인등

라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(안 별표 1)

- 급지 구분 삭제
- 최초 30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
 - 현행 : 1급지-500원, 2급지-200원
 - 개정 : 무료
- 최초 30분 이후 요금 부과단위 변경
 - 현행 :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요금 부과(1급지-250원, 2급지-100원)
 - 개정 : 30분 초과 시 30분 단위 요금 부과(500원)
- 주간, 야간시간 구분 삭제
- 월정기주차요금 일원화
 - 현행 : 1급지 - 75,000원(주간), 56,000원(야간)
2급지 - 20,000원(주간), 22,000원(야간)
 - 개정 : 월 75,000원
- 월정기주차요금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

3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, 제11조, 제14조제2항 및 제18조

4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

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건설교통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
- 전화 : 054-650-6560, 팩스 : 054-650-6339
- 전자우편 : cheonlyong@korea.kr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조 례 명 : 예 천 군 주 차 장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

○ 성 명 (단 체 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 내 용	의 건	비 고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
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표 2에 따른다”를 “이용자의 식별 편리성,
주차장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
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
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표 4에 따른다”를 “주변 여건을
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”로 한다.

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각각 “감정
평가법인등이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1. 시간제 주차요금

1회 주차요금(1구획당)		월정기주차요금표
최초 30분 이내	30분 초과 시 30분 단위	
무료	500원	75,000원

예시) 30분 초과 ~ 60분: 500원, 60분 초과 ~ 90분: 1,000원

비 고

1.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.
2. 1구획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.
3.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4. 월정기주차요금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되,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① · ② (생략)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미만)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u>
제5조(주차장의 표시)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.	제5조(주차장의 표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, 주차장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주변 시설

1. ~ 4. (생략)

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.

③ (생략)

④ 주차장위치, 안내표지의 규격, 표기방법,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.

제17조(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)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
1.·2. (생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

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
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.

제17조(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) 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조제4호에에 따른 감정평가업
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
액으로 할 수 있다.

4. (생 략)

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
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
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
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
으로 산정하되, 3분의 1을 감액
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
시 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
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, 군
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
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
호에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
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
로 할 수 있다.

4. (생 략)

----- 감정평가법
인등이 -----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감정평가법인등
인 -----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【주차장법】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노상주차장의 표지)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(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)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(생략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③ (생략)

제18조(노외주차장의 표지)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(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·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